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 법제화 및 국회의장 지휘권 부여〉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8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득구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01. 09.
3. 회 부 일 : 2025. 0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 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했지만,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막아 국회의 권능행사를 저지하는 불법 행위에 동조함.

독일 등 해외에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지 않고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 등의 파견을 받더라도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만 규정하고 국회의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상위 법령

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해 국회의 입법권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Ⅲ. 검토의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상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9조의2(국회경비대) ①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 경비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경비대를 둔다.</u> <u>② 국회경비대의 대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總警)으로 보한다.</u> <u>③ 국회경비대장은 국회의 경비와 관련된 사무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경찰권(内部警察權)¹⁾과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²⁾을 보유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등의 형식으로 발현됨.³⁾

이 중 경호권은 「국회법」 제143조 및 제144조⁴⁾에 근거하여 회기 중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 이를 위해 국회에 경위(경호기획관실 소속 일반직 국회공무원)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 국회 경비체계는 3선으로 운영되고 각 선별 담당 조직과 임무가 분리되어 있음. 1선(국회 경위)은 원내 회의장 질서유지와 방청 안전관리를, 2선(국회 방호)은 주요 건물 방호와 청사출입관리를, 3선(국회경비대)은 경내 외곽경비와 주요 인사 경호를 담당함.⁵⁾

1)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방청인 등 원내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실력으로써 직접 강제하는 권한

2) 회기에 관계없이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국회 내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내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국회의 질서에 따르게 할 수 있는 권한

3)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4) 「국회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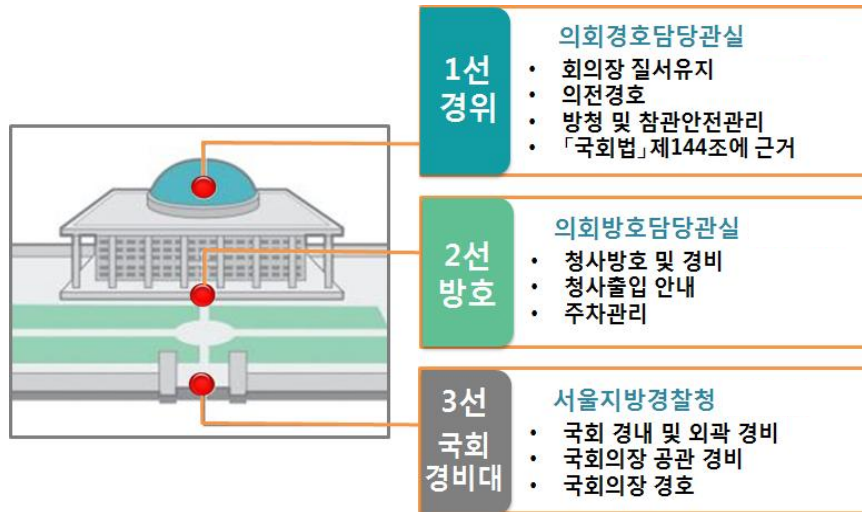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5) 국회 경위와 국회방호는 국회사무처 산하로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반면,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의 지휘를 받는 직할대로 조직되어 있으며, 법적 근거도 상이한데, 국회 경위는 「국회법」 제144조, 국회 방호는 「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의2, 국회경비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음.

[그림-1] 현행 국회 경비체계



※ 자료 : 국회사무처

특히 국회경비대는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 지휘체계를 따르고 있어,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과 서울경찰청장으로 지휘권자가 이원화되어 경호·경비의 기본원칙인 경호지휘단일성⁶⁾ 및 체계통일성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분산된 지휘체계로 인해 국회 내 기습 시위나 질서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이 어려워 긴급 상황에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지휘체계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⁷⁾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 경비대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출석하는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아 그 권능행사를 저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국회등원을 봉쇄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국회 경호체계 자체의 문제

6) 성공적인 경호조직에 대한 불가피한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호요원은 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휘는 단일해야 하고 이를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함. 지휘의 단일성은 경호업무가 신속한 결단과 지휘명령 등과 같은 긴급성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요구됨.

7)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있음.⁸⁾

국회 출입문에서 출입자와 출입차량 통제를 국회 경비대가 담당하는데,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권이 국회의장이 아닌 서울경찰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입봉쇄가 가능했다는 설명임.

이에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 관장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국회 입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의회경찰(Capitol Police)을 운영하는 미국 연방의회나, 연방정부와 주(州)정부로부터 경찰을 파견받는 독일 연방의회 의회경찰(Bundespolizei) 모두 의회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의장에게 있음.⁹⁾

다만,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와 같이 국회경비대를 서울경찰청 소속의 경찰관으로 파견 형태를 운영할 경우 지휘·감독권(국회의장)과 승진·전보 등 인사권(서울청)의 분리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같이 입법부 소속으로 국회 경찰을 별도 선

8)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4.12.3.

9) 보조자료, <주요국 의회 경호·경비 현황> 참조

발하여 국회 질서유지 등을 전담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⁰⁾

둘째,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는 현행 경찰법은 기본적인 경찰 조직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직제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나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¹¹⁾ 서울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만 경찰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¹²⁾

또한, 국회 내부적으로도 국회경비대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임.

문 의 처
02)6788-5344

10)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의안번호 제2206250호), 「국회경호처법안」(장철민의원, 의안번호 제220809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의안번호 제2206288호 / 이광희의원, 의안번호 제2206335호)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를 가진 국회 경찰 관련 법률안이 발의됨.

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직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2) 이 밖에도 경찰청은 통합방위법을 고려할 때, 국회는 국가중요시설로서 방호인력 증원 및 보안시스템 강화 등 자체 방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부청사 및 사법부(대법원·헌법재판소)도 자체 방호인력 운용 중

<참고자료>

▶ 주요국 의회 경호·경비 현황(국회사무처, 2019)

구분	미국(대통령제)	일본(의원내각제)	독일(의원내각제)	영국(의원내각제)
선발	의회에서 직접 의회경찰 선발	경무부, 경시청 소속 기동대	연방경찰 또는 주경찰 파견	런던경찰 (의회와 계약)
신분	의회공무원	의회공무원	의회공무원	런던 경찰
규모	약 2,000여명 (의회경찰 1850, 행정 350)	약 570명 (경무부 470, 경시청 100)	약 170명	약 370명
보안 총괄	경위장 (상원의장 직속)	경무부장 (사무총장 직속)	하원 사무처 (하원의장 직속)	경위장 (의장 직속)
경비 구역	의사당 건물밖 및 외곽경비 (건물내 : 상하원 경호처 담당)	의사당 경호 및 외곽경비	의사당 전체 경호 및 경비	의사당 전체 경호 및 경비
주요 특징	- <u>자체적으로 의회경찰 (Capitol Police : USCP) 조직, 연방의회 경호·경비 담당</u> - 상원의장 직속 의회 경찰 대장은 본회의에서 선출, 의회경찰대를 지휘·감독 - 하원의장, 상하원의원 등 신변경호 및 범죄조사 - 의회경찰은 특별구역 경찰로 경내 법 위반하는 자에 대해 체포 권한 부여	- <u>경무부는</u> 회의장(1선), 건물내(2선), 건물밖(3선)의 경호를 담당 ※ 중의원 경무부(4개과 270명), 참의원 경무부(4개과 200명) - <u>외곽경비는</u> 의장의 지시에 따라 동경 경시청 <u>기동대가 담당</u>(약 100명의 경찰관, 4교대)	- <u>자체 의회경찰 조직이 아닌 파견된 연방·주경찰에 대해 의장이 지휘·감독</u> - 의사당 내 발생하는 범죄 직접 수사, 검찰에 직접 송치(체포권·압수·수색 권한 有) ※ 단 의장의 명시적 승인이 있을 경우 체포수사 가능 - 본회의 개회시 베를린 주경찰 및 연방범죄수사청이 경호·경비 지원	- <u>런던광역경찰청 산하 의회 및 외교보호 사령부 (Parliamentary and Diplomatic Protection : PaDP) 부서에서 의회 보안 및 외교공관 경비 업무 담당</u> - 무장 및 비무장 경찰로 구성, 청사외부와 경내 일부 지역 무장경찰 배치 - 의원 신변보호, 비상상황 대응, 출입자 관리·접근 통제 등 임무 수행

▶ 입법부 소속으로 국회 경찰을 별도 선발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주요 법안

의안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의원 2206250)	국회경호처법안 (장철민의원 22080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22062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2206335)
명칭	국회경호처	국회경호처	국회경비대	국회경비대
형태	국회 기관	국회의장 소속	국회 기관	국회사무처 소속
보안 총괄	국회경호처장	국회경호처장	국회경비대장	국회경비대장
구성	경호공무원 (특정직 국가공무원) + 일반직 국가공무원	- (국회규칙 위임)	경호공무원 (특정직 국가공무원) + 일반직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 (국회규칙 위임)
경비 구역	경호구역 (국회경호처장이 지정)	국회 및 의장공관	국회 및 경호구역 (국회의장이 지정)	회의장 건물 안팎
주요 특징	- 직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무기 사용 가능 - 처장은 직무상 필요 시 다른 국가기관 등에게 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 경호공무원은 업무 중 인지한 그 소관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	- <u>의장공관 경호 수행</u> - 직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무기 사용 가능 - 처장은 직무상 필요 시 다른 국가기관 등에게 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 경호공무원은 업무 중 인지한 그 소관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 - <u>경호처 관련 사무 중 타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정한 경우 그 법에 따름</u>	- 직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무기 사용 가능 - 경호공무원은 업무 중 인지한 그 소관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	- <u>회의장 건물 안은 국회 경비대가 단독 경호하고 회의장 건물 밖은 경찰 공무원과 함께 경호</u>